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2. . . (제 회)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원자력발전소 해체 단계의 안전규제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속기관인 고리원전지역사무소와 한울원전지역사무소에 원자력발전소의 현장 안전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원자력안전분야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수사 등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된 한시정원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 중 1명(6급 1명)을 정규인력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제16조)을 삭제한다.

별표 2 중 총계 “125”를 “127”로 하고, 일반직 계 “124”를 “126”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18”을 “120”으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일반직 계 및 4급 이하 “37”을 각각 “39”로 한다.

별표 5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한시정원 1명(7급 1명)은 2022년 3월 31일까지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현행	개정안
제6장 한시정원	<u>삭제</u>
제16조(한시정원) 원자력안전분야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수사 등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2년 3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둔다.	<u>삭제</u>

신·구정원대비표

■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2]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3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25</u>	<u>127</u>	+2
·	·	·	
·	·	·	
일반직 계	<u>124</u>	<u>126</u>	+2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118</u>	<u>120</u>	+2
·	·	·	

■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3]

지역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14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37</u>	<u>39</u>	+2
일반직 계	<u>37</u>	<u>39</u>	+2
4급 이하	<u>37</u>	<u>39</u>	+2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64